

영등포구의회  
제207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 
관한 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8. 4. 16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 
관한 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 354호로 2018년 4월 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구 주민자치회의 설치, 구성 및 운영, 자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(안 제1조~제2조)

나. 주민자치회 운영원칙 및 주민자치회 명칭 규정

(안 제3조~제4조)

다. 동 행정사무 협의, 동 행정사무 수탁 처리, 자치계획 수립,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회 기능 규정(안 제5조)

라. 주민자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~제17조)

1) 주민자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~2명을 포함한 50명

이내로 구성

2) 위원은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 공개 모집·추첨을 통해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

3) 주민자치회는 사무처리와 회계 및 사업 감사를 위해, 1명의 간사와 2명의 감사 선임

4) 주민자치회 활동 강화를 위해 동 특성에 맞는 분과위원회 구성

마. 주민자치회의 회의 운영 및 주민총회 개최에 대한 사항 규정  
(안 제19조~제20조)

바. 주민자치회 운영계획,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등을 포함한 자치계획 수립·결정·효력에 대한 사항 규정  
(안 제21조~제23조)

사. 구청장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및 협력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규정(안 제24조~제25조)

아.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등 규정  
(안 부칙 제1조~제3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#### 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원안동의
- 라. 입법예고(2018.2.28.~3.20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### 5. 검토의견

- 이 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, 제29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,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차 시범구로 영등포구가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의 설치 근거 및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28개의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- 제정안의 주요내용은,
  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과 주민자치회 등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
  -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원칙과 주민자치회의 명칭을 규정 하였고,
  - 안 제5조는 주민자치회에서 동 행정사무 협의 및 수탁

- 처리, 자치계획수립, 주민총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6조부터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 -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, 주민총회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,
  -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가 수립하는 자치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 - 안 제24조부터 안 제28조에서는 주민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과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, 단체보험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,
  - 경과조치로, 이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,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 된 것으로 보며,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

○ 검토결과,

본 제정 조례안은, 주민자치회의 구성, 기능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내용이 「지방

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, 「지방자치법」과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. 다만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기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, 갈등 요인 등이 없는지와 시업사업이 종료된 이후 부터 구 재정과 인력부담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

**제27조(주민자치회의 설치)**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.

**제28조(주민자치회의 기능)**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

**제29조(주민자치회의 구성 등)**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., 2017.7.26.>

영등포구의회  
제207회 임시회

『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8. 4. 16.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

# 『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』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 364호로 2018년 4월 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마을자치센터의 관리·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를 구의회 동의를 받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## 3. 주요 내용

□ 위탁사무: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마을자치센터 운영 및  
관련사무

- 마을자치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- 마을 공동체 분야사무

- 마을공동체 기초조사, 사업 분석·평가·연구
-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·실행 지원
-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
-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
-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·상담·홍보
- 마을공동체 자원관리
- 마을공동체 공모사업
-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○ 주민자치 분야

-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주민총회 지원
- 주민자치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-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 자치지원관 운영
- 주민자치 사례 기록 및 아카이빙
- 민관협력을 위한 합동 워크숍
- 주민자치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
- 그 밖에 주민자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마을자치센터 운영인력(안): 총 6명  
(센터장 1명, 마을팀 3명, 자치팀 2명)
- 운영방법: 전문기관 선정 민간위탁운영
  -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
- 소요예산(2018기준): 금375,636천원(시비)

분야	소 계	인건비	운영비	사업비	비고
마을	150,514천원	113,843	13,820	22,851	
자치	225,122천원	167,703	4,084	53,335	2018. 6~12 (7개월)

- 관련근거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  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2조(지원센터 설치), 제24조(관리 및 운영)
  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(안)」 제24조(지방자치단체의 지원)
  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
## 5. 검토의견

-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항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2조 및 제24조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(안)」 제24에 따라,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  
- 제출된 민간위탁 사무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주민자치회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자치 센터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(단체)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의 수탁기관에서 마을사업과 자치사업을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.
  
- 다만 시 예산지원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구 예산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므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사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폐지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,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자치법

**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**제22조(지원센터 설치)**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24조(관리 및 운영)**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.

-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### 3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 [조례안 상정](2018.4.16)

- 제24조(지방자치단체의 지원)**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,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  - ④ 구청장은 교육,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 4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민간위탁"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

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2. "수탁기관"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**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** ①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<개정 2013.12.12>

②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한다.  
<개정 2013.12.12>

③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